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67조(말비계)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67조(말비계) · 조문 원문 해당 부분

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지주부재(支柱部材)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,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
2.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,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
3.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-11-15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67조(말비계)

말비계 · 각도와 폭은 서로 다른 방향을 확인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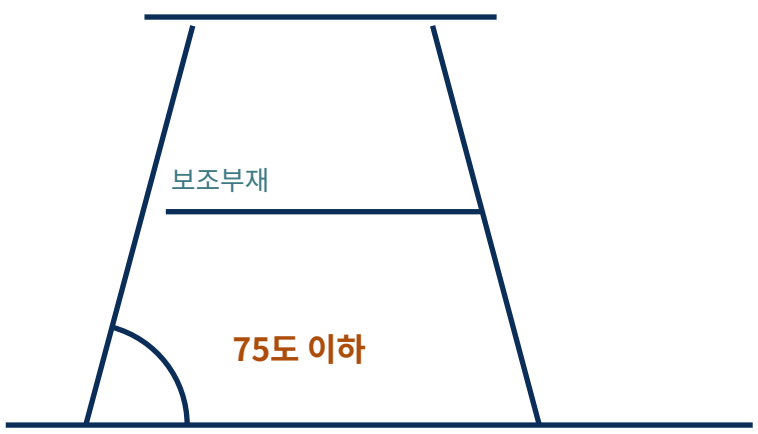

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

높이 2m 초과 → 발판 폭 40cm 이상

위에서 본 발판 · 평면 개념도



긴 방향의 길이가 아니라 짧은 방향의 폭

개념도이며 축척·제품 설치도가 아닙니다. 2m 이하라도 다른 적용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.

제67조(말비계) · 전체 원문

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지주부재(支柱部材)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,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
2.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,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
3.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원문 대조 2026-11-15